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우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음.

주요내용

-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안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안제8조, 제9조)
-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안제10조)
-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로부터의 수강료의 징수 (안제11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본바,

-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으며,
- 평생교육이 대두된 배경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인적자원이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의 진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으며, 평생학습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의 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로는

-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입법형식을 살펴본 바

- 조문의 내용에 따라 장·조·항·호로 적정히 구분하였고, 조문의 중복, 상충, 불명료한 조문표현 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 제1조 목적중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은 1999.3. 경기도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후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을 연계시켜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우리구의 평생교육 시설은 영등포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767개소가 있으며, 네트워크의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학습자원 조사, 강사진 시설의 사용교류, 학습정보 공유, 프로그램 단위의 연계, NGO자원의 활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 2월말 현재 평생학습 도시로 33개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2006.5.26.신청하였는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외에 자치구 예산의 확보와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담부서(팀 또는 과)의 증설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제3조의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안은 평생학습의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이므로, 평생학습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과 시·구의원등으로만 구성하여 전문가의 활용과 민간 주도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 기타 다른 조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평생학습 도시선정과 관련하여 뒷면에 2006 평생학습도시선정 추진일정,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평생교육활성화관련 예산현황, 평생학습협의회 구성비교표 및 타 기관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을 붙였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6. 22

보고자 : 김 찬 재

- #붙임 : 1. 2006. 평생학습도시선정추진일정.
2. 평생학습도시조성및기타평생교육활성화관련예산.
3. 평생학습협의회구성비교표.
4. 타기관평생학습센터운영현황.

2006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 일정

- 평생학습도시 사업광고 및 사업설명회 : 2006. 3.중순
- 사업 신청서 추천 (교육청) : 2006. 4월말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06. 5월 중순
-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현장방문 및 선정 : 2006.7월중순까지
 - 학습도시 신규선정(지정 및 인증), 1도시1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심사, 학습도시 컨설팅 지원도시 선정
- 사업비 교부 : 2006. 7월말
- 평생학습도시 지정/인증서 및 동판 전달식 : 2006.9.30(축제기간)
- 사업비 정산보고 : 2007. 6. 30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기타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

재 원	사 업 명	소요액 (억원)	비 고
특별교부금 (배정 협의중)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30.0	15개 학습도시 × 2억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16.5	33개 학습도시 × 0.5억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4.0	20개 학습도시 × 0.2억
	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지원	4.0	20개 학습도시 × 0.2억
국 고 (확정)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7.2	72개 프로그램 × 0.1억
	성인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16.0	80개 프로그램 × 0.2억
	주말과정교육프로그램	2.0	10개 지자체(대학) × 0.2억
합 계		79.7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비교표

구 분	영등포구	광 명 시	관 악 구	양 천 구	부 천 시
위 원 장	부구청장	부 시 장	위원중 호선	부구청장	시 장
부위원장	호 선	호 선	지 명	호 선	호 선
위 원 수	15인 이내	15인 이내	15인 이내	11인	15인 이내
위 원	- 부구청장 - 국.과장 - 구의원 - 학식.경험자	- 5급이상 공무원 - 시의원 - 학식.경험자	평생학습관련단체 시설의 임.직원	-부구청장 -국.과장4인 -학식경험자6인	-시장 -교육장 -대학총장 -시의원(상임위원장) -학식.경험자
임 기	2 년 (연임가능)	3 년 (연임가능)	2 년 (연임가능)	2 년 (연임가능)	2 년 (연임가능)
회 의	-위원장필요시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전 접수시 -재적%이상 요구시	위원장 필요시	위원장 필요시	-위원장필요시 -구청장 부의안전접수시 -재적%이상 요구시	-연2회 -위원장 필요시
기 능	-기본계획수립.운영 자문 -평생 학습센터운영 및 지원자문 -구청장 부의사항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자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지원	영등포구와 같음	-기본계획수립 -시장. 부의사항
소요예산	수당.여비 등	수당.여비	수당.여비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경비	수당 등

타 기관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2006.3.16현재)

구 분	시 설 규 모	인 력 현 황	운 영 영 수 강좌	세 항 별 예 산	운 영 태	비 고
관 악 구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643.2평) 시설비-23억원	평생교육사 : 1명 (“나” 급) 공무원:5명 (6급:1명, 7급2명, 9급:2명)	55강좌	-일반운영비 : 202,540천원 -강 사 료 : 194,400천원 -평생교육사인건비 별도	직영	평생교육사 “다” 급채용 예정
양 천 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784.78평) 기존시설 전환, 시설비-없음	평생교육사:2명(“다” 급) 공무원:7명 (5급:1명, 6급:2명, 7급:2명,기능:2명)	32강좌	-일반운영비 : 34,880천원 -강 사 료 : 156,550천원 -평생교육사인건비 별도	직영	양천문화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
광 명 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1,363.89평) 시설비-59억원	총17명: 평생교육사:2명(학교직원) 학교직원: 13명 시 직원 : 2명	80강좌	-위탁운영비:1,050,000천원 (강사료,인건비 포함) -일반운영비:115,092천원 (시설유지비.자료집발간.홍보비등)	위탁	위탁운영자: 성공회대학교
부 천 시	복사골 문화재단 내 2층 사무실	평생교육사-4명 (“나” 급-1명)	무	-일반운영비: 19,210천원 -평생교육사인건비 별도	직영	강좌는 유관기관 프로그램 중계

※ 전문계약직 “나”급 연봉 : 상한 50,350천원 하한 34,673천원
 전문계약직 “다”급 연봉 : 상한 41,490천원 하한 30,204천원